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4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조지연·박충권·백종헌

김종양 • 박준태 • 김은혜

박덕흠 • 엄태영 • 김석기

박성민 · 조승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기도했음. 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민감한 영업기밀을 제출하도록 부작용을 낳아 국내 기업의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략기술보유자가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전략

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첨단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및 제50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계약"을 "계약과 제7항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의 기준"으로 한다.

⑦ 전략기술보유자는 해당 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 해외사업장에서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정보 공개 요구에 대 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⑦ 전략기술보유자는 해당 전
	략기술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 해외사업
	장에서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u>®</u>
지정 절차, 제4항에 따른 <u>계약</u>	<u>계</u>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약과 제7항에 따른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의 기준
제50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50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전
	략기술의 유출 방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
	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